

안전보건교육 자료

2016. 06.



서울도시철도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1. 제정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분리하여 1981년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노력”과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및 위반에 대한 처벌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법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규정 개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여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로 규정되었지만, 1981년 독립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의 부속법규이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시스템을 설정함과 동시에 벌칙과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으로써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로 제9장 벌칙에서는 형벌과 행정벌이 규정되어 있다. 형벌 적용대상은 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6조의 2-1등급), ②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7조-2등급),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7조의2-3등급), ④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 ⑤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69조-5등급), ⑥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형(제70조-6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벌규정

가. 1등급(중대재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결과적 가중범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

나. 2등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안전상 조치

법 제23조에는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관한 조치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관하여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제24조에서는 보건상의 조치를 두어,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소음·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등에 관하여 보건조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명령위반

법 제48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제51조에는 감독상의 조치를 두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계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3등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의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 방호장치 성능검정 의무 위반, 합격취소 방호장치 사용 등의 금지의무 위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의무 위반, 검사에 불합격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사용금지 의무 위반, 보호구 검정의무 위반, 검정에 불합격된 보호구 사용 등의 금지의무 위반,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기준에 따른 제조 등의 의무 위반, 불합격된 방호장치를 제조하는 자 등에 대한 수거·파기명령 위반,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위반 등을 두고 있다.

라. 4등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의 직접적인 관리의무 외에도 작업도중의 행정업무상에 따른 의무를 두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안전인증 표시금지 및 광고금지 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5등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설공사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작업환경측정 결과 고지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의무 위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전환 등의 조치의무 위반, 질병자에 대한 근로금지 또는 제한 및 회복자에 대한 복직의무 위반 등이 해당한다.

바. 6등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실시,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구를 받고서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벌금규정을 두고 있다.

사.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요약)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1호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	600	1,0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12조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3	15	30
3.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300	400	500
4.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500	500	500
5.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 당)	50	250	500

7. 법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8. 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9.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수급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수급인의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 5	250 10	500 15
10.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50	300	500
11. 법 제2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10	250 20	500 30
12. 법 제3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1,000	1,000
13.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100	500 200	1,000 300
14. 법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3호		100	200	300

15.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분기/1명당)	3	5	10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연간/1명당)	3	5	10
16.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7.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8.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19.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20	30
20.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	60	100
21.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제3호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5	25	50

22. 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300	600	1,000
23. 법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300	600	1,000
24.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25.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	150	300
26.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10	20	5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5	10	2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3	6	12

<p>27.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4항제1호</p>	<p>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받은 경우</p> <p>-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p> <p>- 대상화학물질을 양도 · 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p> <p>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p>	<p>5</p> <p>3</p> <p>5</p>	<p>10</p> <p>6</p> <p>10</p>	<p>20</p> <p>12</p> <p>20</p>
<p>28. 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72조 제5항제8호</p>	<p>1)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p> <p>-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p> <p>-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화학물질 1종당)</p>	<p>3</p> <p>2</p>	<p>6</p> <p>4</p>	<p>12</p> <p>8</p>

29. 법 제4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법 제72조 제5항제8호	5	10	15
30. 근로자가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5	10	15
31. 법 제43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72조 제5항제2호	300	300	300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

-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하며,
- 기온 및 해수 수온의 상승으로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주의가 요구된다.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 특히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으므로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는 등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

① 일상 생활

- ◇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
-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는다.

② 어패류 관리 및 조리

- ◇ 어패류는 -5℃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
- ◇ 어패류는 60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 *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한다.
- ◇ 조리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 날 생선 및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 어패류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

1. 비브리오패혈증 개요

가. 법정감염병

2000년에 법정 감염병 (제3군) 지정

나. 원인병원체

Vibrio vulnificus(비브리오 볼니피쿠스균)

다. 감염경로

- 섭취: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 혹은 덜 익힌 상태로 섭취
- 접촉: 오염된 해수가 상처부위를 통해 침입

라. 잠복기

- 섭취시: 20~48시간
- 피부접촉시: 12시간 이내

마. 주요증상 및 징후

-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
- 피부병변: 발열후 36시간 지나면 주로 하지에서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특징적 피부병변: 수포성 괴사

- 패혈증: 저혈압, 혈소판감소, 쇼크, 파종성혈관내응고(DIC)

바. 진단

검체(혈액, 피부병변, 대변 등)에서 균 분리 동정

사. 치료

- 적절한 항생제(시프로플록사신, 독시사이클린 등) 치료
- 적극적인 병변절제(debridement)

아.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격리: 필요없음
- 접촉자격리: 필요없음

자. 예방

-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고위험군: 만성 간 질환(만성간염, 간암, 간경화 등), 알코올중독, 악성종양환자, 장기이식환자, AIDS 등 면역저하자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보관, 60℃ 이상 가열처리한다.
-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한다.

